

한의학연구소 규정

제정 1991. 4. 11.

제4차 개정 2020. 11. 06.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연구소는 상지대학교 부설 한의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한다. (조 개정 2006.12.4.)(규정명 개정 2018.07.27)

제2조(목적) 연구소는 한의학의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함으로써 학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연구소는 상지대학교 내에 둔다.

제2장

(삭제 2006.12.4)

제4조(사업)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기초이론 부문 - 원전 의사학부문, 생리부문, 병리부문
 2. 진단 치료기기 부문 - 진단부문, 기기개발부문
 3. 침구학부문 - 경혈학부문, 침구학부문
 4. 본초방제학부문 - 본초부문, 방제학부문, 규격화 제제부문, 식품부문
 5. 임상부문 - 신요법부문, 난치병부문, 임상부문
 6. 예방의학부문
 7. 의료제도 및 정책개발 부문
 8. 동서의학의 비교연구부문
 9. 국내외 연구기관, 단체 등과의 교류 및 협력부문
 10. 융합연구부문 (신설 2018.07.27.)
 11. 기타 연구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조 개정 2006.12.4)

제3장 조직

(개정 2006.12.4)

제5조 삭제 (2006.12.4)

제6조 삭제 (2006.12.4)

제7조 삭제 (2006.12.4)

제8조 삭제 (2006.12.4)

제9조 삭제 (2006.12.4)

제10조 삭제 (2006.12.4)

제11조(연구소장) ① 연구소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중에서 총장이 임면한다.

②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③ 연구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조 신설 2006.12.4)

제12조 삭제 (2006.12.4.)

제4장

(삭제 2006.12.4)

제13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에는 연구원의 임면, 연구사업의 계획과 수행, 예산 및 결산,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정, 기타 연구소 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6.12.4)

② 운영위원은 본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신설 2006.12.4)

③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신설 2006.12.4)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수는 연구소장을 포함하여 **9명으로** 하며, 동일학과 교수가 과반수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06.12.4.)(**개정 2020.11.06.**)

(조 개정 2006.12.4)

제14조 삭제 (2006.12.4)

제15조 삭제 (2006.12.4)

제16조 삭제 (2006.12.4)

제17조 삭제 (2006.12.4)

제18조 삭제 (2006.12.4)

제19조(간사) 본 연구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간사를 두되, 연구소장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 중에서 위촉하거나 별도의 사무직원을 임면할 수 있다.

(조 신설 2006.12.4)

제20조(연구원 등) 연구원 등 임용에 관한 사항은 연구교수·연구원임용규정에 따른다.

② 삭제 (2006.12.4)

③ 삭제 (2006.12.4)

(조 개정 2006.12.4)

제21조(연구보조원) 연구원의 업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으며, 연구소장이 임면한다.

(조 신설 2006.12.4)

제5장 회의

(신설 2006.12.4)

제22조(회의) ① 연구소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정리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③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정의 개정과 연구원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조 신설 2006.12.4)

제6장 재정

(개정 2006.12.4)

제23조(재정) 본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교외 연구비와 수탁 연구비
2. 교내 연구비
3. 정부·대학의 보조금 및 기타 기부금
4. 기타 수입

(조 신설 2006.12.4)

제24조(회계년도 및 예산 결산) ①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② 삭제 (2006.12.4)

③ 매 회계년도의 예산 및 결산은 소속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06.12.4)

(조 개정 2006.12.4)

제7장 보칙

(신설 2006.12.4)

제25조(규정 개정 및 해산) ① 본 연구소의 규정 개정 및 해산은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연구소가 해산되는 경우에 그 재산은 상지대학교에 귀속된다.

(조 신설 2006.12.4)

제26조(준용) 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교수·연구원임용규정 및 부설연구소(원)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조 신설 2006.12.4)

제27조(지침 등) 연구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조 신설 2006.12.4)

부칙

이 규정은 1991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6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1143 2006.12.4)

이 규정은 2006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393 2018.7.27)

이 규정은 2018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710, 2020.11.06.)

이 규정은 2020년 11월 06일부터 시행한다.